

BPO 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L/C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은희* · 정희진**

-
- I. 서론
 - II. BPO의 개념 및 기술적 배경
 - III. BPO 제도의 유용성
 - IV. BPO 제도와 L/C 제도의 비교
 - V. 결론
-

주제어 : BPO, TSU, TMA, ISO 20022 TSMT Message, URBPO 750

I. 서론

급변하는 국제무역시장에서 물품대금의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전자무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EDI 무역거래나 인터넷거래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세계무역거래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무계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신용장제도는 은행의 지급확약과 함께 물품의 물리적 이동에 따른 서류거래에 의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E-Mail : berjaya@hanmail.net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E-Mail : 0175849384@hanmail.net

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반세기동안 국제물품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국제적 공급과열에 따른 매수인의 협상력이 강화됨에 따라 매수인의 견지에서 보다 이로운 오픈어카운트(Open Account, 이하 “O/A”¹⁾라 한다) 결제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결제수단의 하나로 새로이 등장한 BPO(Bank Payment Obligations)²⁾ 제도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제공한 정보와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제공한 정보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계약서에 약정된 의무은행³⁾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 신용장거래에서 종이서류를 다루는 비용을 감소시켜 무역대금 결제 환경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자무역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BPO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2013년 7월 1일, 국제적 통일규칙인 URBPO 750⁴⁾이 발효되었는데, 이 통일규칙은 세계적으로 산업계의 규칙을 제·개정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CC와 글로벌 금융통신망 및 메시징시스템을 갖추고 무역솔루션의 개발과 운용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SWIFT⁵⁾가 제휴하여 제정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의 지급결제를 보다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채택된 BPO 제도의 개념과 동 제도를 구성하는 TSU, TMA 및 ISO 20022 TSMT 메시지 등 그 기술적 배경을 고찰한 후 동 제도의 유용성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핵심부분에서는 신용장제도의 틀을 기반으로 발전된 BPO 제도가 신용장제도와는 근본적

- 1) ‘O/A’ 거래에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하고 상업송장을 포함한 기타 선적서류들도 수입자에게 직송한다. 즉, 수입자는 물품구입 후 사후에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O/A 거래는 ‘외상판매’로 불리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의 채무에 대해 화환신용장거래에서와 같은 신용연장의 기회를 제공받는데 비하여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하기 전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G. C. Jimenez, *ICC Guide to Export/Import*, 4th Edition, ICC, 2012, p. 112).
- 2) ‘BPO’의 용어는 국내에서 ‘은행지급의무’ 또는 ‘은행지급보증’ 등으로 번역되어 불리어지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어의 약자 그대로 “BPO”로 지칭하기로 한다.
- 3) ‘의무은행(Obligor Bank)’은 “BPO를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URBPO 750 제3조).”
- 4) ‘URBPO 750’은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의 약자이며, ICC Publication No.750E로 발간되었다. 국내에서 URBPO 750은 ‘은행지급의무에 대한 통일규칙’ 또는 ‘BPO 통일규칙’ 등으로 번역되어 불리어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어의 약자 그대로 “URBPO 750”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URBPO 750의 최종초안은 2013. 3. 5.자에 발표되었고, 2013. 7. 1. 자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 5) ‘SWIFT’는 그들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통신플랫폼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특히, ISO 20022와 같은 금융메시징 표준을 규정하고, SWIFTNet 거래매칭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등 금융통신분야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A. Casterman, “The BPO and the future of trade finance”, *DCInsight*, Vol. 18, No. 2, April-June 2012, p. 13).

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함으로써 실무계에서 동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BPO의 개념 및 기술적 배경

1. BPO의 개념

URBPO 750에 따른 BPO의 정의는 “확정기준정보⁶⁾에 의하여 요구된 모든 총이행정보⁷⁾가 제출되어 정보일치⁸⁾가 발생하거나 정보불일치⁹⁾가 수락되는 것을 전제로 의무은행이 수취은행¹⁰⁾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연지급의무를 부담한 후 만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취소불능하고 독립된 확약을 의미한다.”¹¹⁾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BPO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다면 의무은행이 수취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금지급형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그들의 거래은행에 제출한 구매주문서의 내용이 은행 상호간에 서로 상이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의 거래은행에게로 무역대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있다.¹²⁾ BPO 거래에서는

-
- 6) 확정기준정보를 설명하기에 앞서, ‘기준정보(Baseline)’란 매수인과 매도인이 기초무역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정보를 매수인은행과 매도인은행에게 제출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정보를 제출받은 두 은행이 TMA(중앙집중식 정보일치관독장치)에서 정보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비교되는 두 정보를 기준정보라 하며, TMA에서 두 기준정보가 일치하게 되면 ‘확정기준정보(Established Baseline)’가 된다.
 - 7) 기초무역거래와 관련한 기준정보가 TMA에서 일치하게 되면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여 매수인에게 직송하고 매매계약의 이행내역을 참여은행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행내역을 제출받은 참여은행이 확정기준정보와의 비교를 위해 TMA에 보내는 상업, 운송, 보험, 증명 또는 기타 증명 등의 정보를 ‘총이행정보(Data Set)’라 한다.
 - 8) ‘정보일치(Data Match)’는 “요구된 모든 총이행정보와 확정기준정보를 비교한 결과가 총이행정보일치보고서에 완전일치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URBPO 750 제3조).”
 - 9) ‘정보불일치(Data Mismatch)’는 “요구된 모든 총이행정보와 확정기준정보를 비교한 결과가 총이행정보일치보고서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URBPO 750 제3조).”
 - 10) ‘수취은행(Recipient Bank)’은 “BPO의 수혜를 받는 은행을 의미한다. 수취은행은 항상 매도인은행이다(URBPO 750 제3조).”
 - 11) URBPO 750 제3조.
 - 12) D. J. Hennah,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ICC Publication No. 751E, 2013, p. 23.

의무은행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지급확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BPO가 은행간 지급약속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는 구조이며, 은행과 그들 고객과의 거래관계는 별도의 개별계약을 통해 약정하여야 한다.

오늘날 국제간 무역거래의 거의 90%가 O/A 방식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³⁾ 하지만 O/A 방식 하에서는 수출자가 신용장에 부합하는 확실한 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BPO 제도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BPO 제도는 O/A 거래에 따른 구매주문서, 상업송장, 선적통지서 및 선하증권 등의 선적정보가 공규기반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실제 선적물품과 일치하게 될 때 의무은행이 특정일자에 수취은행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취소불능한 확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BPO는 일치하는 데이터에 의거 화환신용장거래의 비즈니스 이익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적인 무역금융의 물리적 단점을 제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¹⁴⁾

2. BPO 거래의 기술적 배경

1) Trade Service Utility

BPO와 연동되는 Trade Service Utility(이하 “TSU”라 한다)는 중앙집중식 매칭엔진으로서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 등의 기초계약과 관련된 서류상의 데이터를 적기에 정확하게 대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¹⁵⁾ TSU는 의무은행이 수취은행에게 조건부의 취소불능의무를 이행하도록 공급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은행이 그들 기업고객에게 선적 전 금융 및 선적 후 금융의 기회를 부여하여 현금예측, 유동성 관리, 현금전환주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¹⁶⁾ 아래 <표-1>은 TSU에 의해 제공되는 공급망금융의 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TSU 시스템에 의한 거래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수입자와 수출자가 각각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출한 구매주문서의 내용을 공통의 매칭시스템인 TSU에서 비

13) D. J. Hennah, “Bringing the Bank Payment Obligation to market”, *DCInsight*, Vol. 16, No. 3, July-September 2010, p. 10; A. Casterman, “The BPO rules: on the way to adoption”, *DCInsight*, Vol. 19, No. 1, January-March 2013, para. 3.

14) A. Casterman, “Modernizing global trade finance practices”, *Journal of Payments Strategy & Systems*, Vol. 6, No. 3, July 2012, p. 228.

15) <https://www.swift.com/myswift/ordering/order-products-services/trade-services-utility-tsu>(2016. 12. 1.자 최종방문).

16) SWIFT, “Trade Services Utility: Helping banks meet the supply chain challenge”, *TSU Factsheet*, 2008.

교하게 된다. 이후 TSU에서 일치된 구매주문서의 내용과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동 시스템에 입력한 실제의 선적정보가 자동으로 점검되어 문제가 없으면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수출자의 거래은행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된다.¹⁷⁾

<표-1> TSU에 의한 공급망금융의 이점

TSU의 특성	은행측면의 이점	기업측면의 이점
제공된 자료의 확실성	업무효율성 증가 리스크 감소	여신한도 증가 가격경쟁력 우위
자료매칭의 정확성	상업서류의 하자감소	적시의 금융혜택

자료 : SWIFT, “Trade Services Utility: Helping banks meet the supply chain challenge”, *TSU Factsheet*, 2008.

2) TMA

URBPO 750 제3조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TMA는 참여은행¹⁸⁾으로부터 받은 TSMT 메시지의 처리를 담당하고 그 메시지에 담긴 정보를 자동으로 비교하고 그에 따라 관련된 TSMT 메시지를 각 참여은행에게 보내는 중앙집중식 정보일치판독장치¹⁹⁾를 의미하며, 이를 참여은행이 소유하는지는 불문한다.”¹⁹⁾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제상공회의소의 URBPO 750 하에서 참여은행간에 교환되는 메시지는 ISO 20022 TSMT 표준을 준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BPO 서비스를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BPO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은 TMA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TMA 운영자는 가입기준을 결정하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한편, 참여은행은 그러한 제도 하의 운영방침을 숙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²⁰⁾

TMA 내에서 다양한 처리단계를 거치는 동안 TMA 상태는 변화하는데, 보통 정보일치, 기준정보변경, 상태변경요청 또는 시간경과 등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TMA 거래는 최초기준정보제출²¹⁾ 메시지를 매수인은행 또는 매도인은행으로부터 수취함으로써 시작된다. 최초기준정보제출 메시지는 확정기준정보 내에 있는 지급

17) D. Meynell,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 18, No. 2, April-June 2012, p. 15.

18) ‘참여은행(Involved Bank)’은 “매도인은행 또는 수취은행(해당시점에 당해 은행의 역할에 따라 다름), 매수인은행, 의무은행 또는 제출은행을 의미한다(URBPO 750 제3조).”

19) URBPO 750 제3조.

20) Hennah, *op. cit*(2013), pp. 55~56.

21) ‘최초기준정보제출(Initial Baseline Submission)’은 기준정보의 확정을 위해서 매도인은행 또는 매수인은행이 TMA에 가장 먼저 기준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 최초기준정보제출은 두 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이 먼저 하여도 무방하다.

의무기재부분란에 BPO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업송장에서 추출된 데이터로 기준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통상 구매주문서의 자료를 토대로 한다. 만일, 지급의무기재부분란이 누락되었다면 참여은행들의 합의 하에 후일에 기준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BPO를 추가시킬 수 있다.²²⁾ 아래의 <표-2>는 TMA에 나타나는 거래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표-2> TMA의 거래상태

거래상태	의 미
Proposed	최초기준정보제출은 매수인은행 또는 매도인은행으로부터 수취된다.
Partially Matched	매수인은행 또는 매도인은행에 의해 기준정보가 재제출 되었지만, 두 기준정보 중 일부 데이터요소만 일치한다.
Established	재제출된 기준정보가 최초기준정보제출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면 TMA는 기준정보가 '확정'상태임을 나타내는 완전일치의 기준정보일치보고서를 발행한다.
Active	확정기준정보와의 매칭을 위해 총이행정보가 제출된다.
Amendment Requested	일방의 참여은행이 기준정보의 변경을 제안하면 다른 참여은행은 수락할지 또는 거절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Status Change Requested	매수인은행 또는 매도인은행이 상태변경요청을 하면 상대방은행은 수락할지 또는 거절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Complete	모든 총이행정보가 확정기준정보와 성공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기준정보는 재개되거나 종결된다.
Closed	보고서의 요청을 제외한 향후 조치는 이어질 수 없다.

자료 : Hennah, David J.,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ICC Publication No. 751E, 2013, p. 57.

3) ISO 20022 TSMT 메시지

ISO 20022 TSMT 표준은 기초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참여은행이 제출한 상업, 운송, 보험, 증명 등의 총이행정보 및 참여은행과 TMA간에 교환되는 TSMT 메시지를 명시한 것이다. 금융서비스분야의 다른 ISO²³⁾ 표준과 같이 TSMT 메시지를 위

22) Hennah, *op. cit(2013)*, p. 58.

23)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로서 '국제표준화기구'로 불린다. ISO는 물품, 서비스 및 기술의 국경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을 공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금융기관들은 그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객 및 거래상대방과 날마다 대량의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타입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해하고 일방의 컴퓨터가 또 다른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한 ISO 20022²⁴⁾ 표준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기술제공자의 특허가 붙은 것은 아니다.²⁵⁾

2013년 현재, ISO 20022 TSMT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메시지 수는 50개인데, 이러한 메시지는 특별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TMA를 지원하고 거래에 관련하는 모든 은행간 보고서 및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50개의 메시지 중 19개만이 URBPO 750 제4조에서 언급되는데,²⁶⁾ 아래 <표-3>은 전자플랫폼에서 이용되는 ISO 20022 TSMT 메시지의 유형 및 목적 등을 설명한 것이다.

<표-3> ISO 20022 TSMT 메시지의 구조

메시지 유형	메시지명	메시지의 목적
tsmt. 005.001.02	변경수락	기준정보변경요청의 수락
tsmt. 006.001.02	변경수락통지	기준정보변경요청의 수락통지
tsmt. 007.001.02	변경거절	기준정보변경요청의 거절
tsmt. 008.001.03	변경거절통지	기준정보변경요청의 거절통지
tsmt. 009.001.03	기준정보 변경요청	확정기준정보의 변경요청
tsmt. 010.001.03	기준정보 일치보고서	기준정보의 확정을 보고하거나 두 최초기준정보제출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기준정보 확정의 실패를 보고
tsmt. 013.001.03	총이행정보 일치보고서	확정기준정보에서 요구된 총이행정보제출이 있고, 그러한 확정기준정보와 총이행정보의 자동비교를 통한 자료일치 또는 자료불일치를 보고

를 해석하고 판독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동화된 환경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ISO는 이러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표준화를 시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Hennah, *op. cit(2013)*, pp. 42~43 참조).

24) 'ISO 20022'는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모든 금융관련 사업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발전에 적용가능한 공개표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ISO 20022의 주요 신택스(syntax)는 W3C(Worldwide Web Consortium)에서 개발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ISO 20022의 주요 장점으로는 단일사용자가 아닌 공동사용자의 참여로 제어되는 공개표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L. Stephen, "ISO 20022 and real-time domestic payments", *Journal of Payments Strategy & System*, Vol. 9, No. 1, 2015, pp. 22~24).

25) Hennah, *op. cit(2013)*, p. 44.

26) *Ibid*, pp. 44~45.

메시지 유형	메시지명	메시지의 목적
tsmt. 014.001.03	총이행정보 제출	확정기준정보와의 비교를 위해 제출된 선적정보
tsmt. 018.001.03	진행요청서	제안되는 기준정보, 확정기준정보 또는 확정기준정보의 변경제의를 담은 세부사항을 통지
tsmt. 020.001.02	불일치수락	자료불일치의 수락
tsmt. 021.001.03	불일치수락 통지	매수은행에 의한 자료불일치의 수락통지
tsmt. 022.001.03	불일치거절	자료불일치의 거절
tsmt. 023.001.03	불일치거절 통지	매수은행에 의한 자료불일치의 거절통지
tsmt. 047.001.01	특별요청	제출은행이 총이행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통지하거나 통지은행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확정기준정보에 담긴 자신의 역할을 철회하는 상황에 이용
tsmt. 048.001.01	특별통지	다른 참여은행이 특별요청 메시지를 수령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
tsmt. 049.001.01	역할및기준 정보수락	진행요청서에 담긴 기준정보에 명시된 역할을 수락
tsmt. 050.001.01	역할및기준 정보거절	진행요청서에 담긴 기준정보에 명시된 역할을 거절
tsmt. 051.001.01	역할및기준 정보수락통지	진행요청서에 응답하여 역할및기준정보를 수락하였음을 통지
tsmt. 052.001.01	역할및기준 정보거절통지	진행요청에 응답하여 역할및기준정보를 거절하였음을 통지

자료 : Hennah, David J.,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ICC
Publication No. 751E, 2013, pp. 45~52.

III. BPO 제도의 유용성

1. 국제무역거래에서 위험완화수단으로서 역할

ICC에서는 국제무역거래에서 BPO 제도가 제공하는 위험완화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BPO 제도는 낮은 신용등급의 수입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은행이 지급확약을 함으로써 금융위험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자의 일시적 운전자금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입자가 거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의 의무은행에 BPO의 발행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은행들에게 지급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²⁷⁾

둘째, BPO의 이용을 통해 선적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수출자가 기준정보의 확정 후 조기에 선적을 실시하고 이후 선적정보를 거래은행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²⁸⁾

셋째, 환시세, 인플레이션 및 금리변동 등 경제적 위험에 대하여 자국통화를 이용하거나²⁹⁾ 현금흐름의 예측³⁰⁾이 가능하다.³¹⁾

2. 시간과 비용절감

비용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대금결제에 따른 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³²⁾ 신용장거래에 비하여 발행수수료 및 매입 및 추심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

27) ICC “Frequently Asked Questions - Corporates”, *Discussion Paper*, Document No. 470/1221-12, 2013, pp. 6-7.

28) 한낙현,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제2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12, p. 161.

29) 수입자는 거래은행인 BPO 발행국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30) BPO상 당사자들은 전자자료 매칭을 통한 공급사슬의 범주에 있게 되므로 수출자는 현금흐름의 파악이 가능하여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고, 수입자 역시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하여 수출자와 지급조건을 협상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K. C. Tan, “Bank Payment Obligations: The Way Forward”, *BPO Press coverage*, January 2012, p. 3).

31) ICC, *op. cit.*(Document No. 470/1221-12), p. 7.

32) M. Goparaju and K. M. Meyer, · C. Chiu, “Bank payment obligations slowly gain transaction”, *DCInsight*, Vol. 19, No. 2, April-June 2013, p. 10.

고 각종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수출자 입장에서 채권의 조기추심에 따른 효율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결제시기가 서로 맞지 않는 미스매칭에 대하여 은행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을 제공³³⁾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거래흐름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절차에 있어서 수출입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은행의 지급확약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URBPO 750 제3조³⁴⁾에 의한 BPO의 의미는 합의된 지급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시에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이 된다. 이와 같은 의무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지급확약은 BPO가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융의 기회를 보다 광범위하게 만든다.

금융혜택의 예로서, 매수인의 관점에서 BPO는 선지급보다 안전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료가 전자처리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매수인은 대금지급 전에 요구된 명세에 따라 만기일 전에 물품의 선적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를 토대로 필요한 곳에서 금융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³⁵⁾

4.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화환신용장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서류심사과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속도가 느리며, 그 결과가 자주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분쟁이 야기되고 대금지급을 지연하게 만드는 하자위험은 치명적이

33)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BPO 하에서 승인된 구매주문서나 상업송장에 기초하여 자신의 은행으로부터 선적 전후에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BPO 하에서 각 은행으로부터 지급조건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임재욱, “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4. 8, p. 185).

34) “‘Bank Payment Obligation’ or ‘BPO’ means an irrevocable and independent undertaking of an Obligor Bank to pay or incur a deferred payment obligation and pay at maturity a specified amount to a Recipient Bank following Submission of all Data Sets required by an Established Baseline resulting in a Data Match or an acceptance of a Data Mismatch pursuant to sub-article 10(c).”

35) 박세운 · 한기문 · 류건우 · 허해관, URBPO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 2016, p. 28 참조.

게 된다. 실증분석에서는 70% 이상의 서류가 처음 제시되었을 때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³⁶⁾

하지만 BPO를 이용할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단지 요구된 은행서비스의 제한된 자료요소에 집중하면 되고, 이들 자료요소는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매치된다. 전자적 자료매치는 처리과정의 질을 개선하고 하자과 분쟁의 위험을 줄여서 입증과정을 신속하게 한다.³⁷⁾ 수작업으로 하는 서류심사과정을 전자적 자료매치로 대체하게 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크게 증가된 정확성과 객관성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동시에 BPO에는 유연성이 있어서 자료가 매치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와 같은 매치되지 않는 부분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즉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처리결과가 신속하다.³⁸⁾

5.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강화

BPO를 채택함으로써 매수인은 주요 매도인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³⁹⁾ 매수인은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매도인은행에 적시에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매도인과 BPO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공급망 과정의 간소화에 기여하여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다른 매수인에 비해 개선된 지급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경쟁우위에 서게 된다.⁴⁰⁾

반면, 기준정보가 확정되기까지 수출자와 수입자 상호간에 여러 차례 거래에 대한 제고를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취소 및 내용변경 의뢰를 받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관계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6. 구조화된 산업표준규정 준수

BPO는 전자송장(e-invoicing)을 포함하여 무역, 지급 및 현금관리의 기술적 통합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ISO 20022 TSMT에 기반을 두고 있다.⁴¹⁾

36) Hennah, *op. cit(2013)*, p. 30.

37) 박세운 외 3인, 전계서, p. 28.

38) 상계서, pp. 28-29 참조.

39) V. Madhavan, "BPO - a step toward electrification in supply chain finance", *DCInsight*, Vol. 19, No. 2, April-June 2013, p. 11.

40) Hennah, *op. cit(2013)*, p. 31.

BPO와 과거의 전자적 솔루션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전의 전자적 솔루션이 전자 자료교환(EDI) 표준을 시행하는 반면에 BPO는 구조화된 자료교환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자료매칭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도 실행될 수 있는 산업표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⁴²⁾ 수출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용가능한 정보의 유동성을 예측가능하고 불일치의 수정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⁴³⁾

IV. BPO 제도와 L/C 제도의 비교

1. 거래방식의 상이

1) 서류거래 대 전자정보거래

신용장거래와 BPO 거래의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전자가 서류거래인 반면 후자는 전자정보거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UCP 600 제5조에 의하면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매계약 등의 대상은 물품, 용역 및 기타 이행이 되겠지만 실제 신용장거래의 대상은 서류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의 제조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지급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의무까지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⁴⁴⁾

한편, URBPO 750 제7조에 의하면 “참여은행은 정보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러한 정보 또는 서류가 관계된 서류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BPO 거래의 전자정보거래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거래성은 기준정보의 확정단계에서 전자정보를 제출하는 절차, 제출된 기준정보를 TMA에서 비교되는 절차, 비교결과를 통지하는 절차 등을 포함한다. 또한

41) 임재욱, 전계논문, p. 186 참조.

42) 박세운 외 3인, 전계서, p. 30.

43) 임재욱, 전계논문, p. 186.

44) 서류 매입시에 은행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확인하도록 한다면 은행원이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선적항에서 물품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후에는 물품의 확인이 곤란하게 되며, 또한 은행원이 물품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기가 곤란하게 된다(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2007, p. 75).

총이행정보의 전자정보가 TMA에 제출되고, 그 총이행정보가 확정기준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TMA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되고, 그 결과의 통지도 TMA가 전자적으로 실행한다. 전자정보거래성에 따라 의무은행은 매도인은행이 제출한 총이행정보에 나타나는 기재사항이 실제적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컨대, 물품이 기초계약상 선적항에서 실제로 선적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⁴⁵⁾

정보는 많은 사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서류에 근거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추출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은행은 그 정보와 관련 있는 그러한 서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는 BPO 거래가 서류거래의 대체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교환은 TMA를 통하여 전신통지문으로 보내져야 하고, 이러한 전자교환문서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URBPO 750 거래에서도 서류의 교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서류의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보조자료로서 참고자료일 뿐이다.⁴⁶⁾

2) 거래의 주관성 대 거래의 객관성

신용장거래에서의 지정은행, 확인은행 및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대금지급을 하게 된다.⁴⁷⁾ UCP 600은 서류심사에 적용해야 할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⁴⁸⁾ 제출된 종이서류의 일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UCP상의 특정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 모순된 해석 내지는 상이한 판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⁴⁹⁾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는 은행의 서류심사기준과 관련하여 ICC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을 통하여 UCP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등을 발표하여 실무상 적용의 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용장거래는 사람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⁵⁰⁾

45) 박세운 외 3인, 전제서 p. 91.

46) G. Collyer and D. Taylor, "Two pillars of the Banking Commission look back at the last two decades", *DCInsight*, Vol. 20, No. 1, January-March 2014, paras. 53~57 참조; 이대우·양의동, "URBPO 실행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0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9, p. 106.

47) UCP 600 제14조 제a항.

48) 예컨대, 제2조 제5문: 일치하는 제시, 제14조 제a항: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제a항: 불일치서류의 수리거절 등의 조항이 해당된다.

49) G. L. Wynne and H. Fearn, "The bank payment obligation; will it replace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now, or ever?",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2014, pp. 103~104.

50) 김희준, "TSU/BPO 방식의 국제물품매대대금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42집, 전

반면, BPO 거래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주관성이란 요소를 제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⁵¹⁾ 즉, BPO 거래에서 선적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 거래되고 거래은행은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점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기초거래내용과 일치하면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⁵²⁾

2. 기본당사자의 상이

신용장거래와 BPO 거래는 주요 당사자간 권리주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매도인이 기본당사자로 참여하고, 매수인,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정은행 등이 기타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의 매도인은 거래의 기본당사자로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수익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BPO 거래에서는 의무은행과 수취은행을 포함한 참여은행이 전자플랫폼을 이용한 기본당사자로서 거래에 참여하나 매수인과 매도인은 거래관계에서 제외되며, URBPO 750의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⁵³⁾ 언제, 어떤 금액이 수취은행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이전되느냐 하는 것은 기업과 수취은행간에 기초계약에서 협상할 문제이고⁵⁴⁾ 그 조건은 두 당사자간의 계약에 반영된다. 즉, 수출자가 결제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은행이 수취하는 것이므로 수취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어 수출자의 BPO 매입에 안심하고 응할 수 있게 되며,⁵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궁극적인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수취은행이 된다.⁵⁶⁾ BPO 거래는 은행간 표준관행과 규칙이 적용되고, URBPO 750은 은행간 전자공간을 규율하므로 수익자는 수취은행이 된다. 이때, BPO가 성립되면 의무은행과 수취은행간 의무는 법적으로 구속되게 되며, 매도인과 수취은행간에는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매도

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9, p. 519.

51) Wynne *et al*, *op. cit.*, pp. 103~104.

52) 송경숙·채훈, “TSU/BPO 거래의 특성 및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국제상학 제3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6. 6, p. 113.

53) 상계논문, p. 113 참조.

54) ICC, “Frequently Asked Questions - Corporates”, *Discussion Paper*, Document No. 470/1206rev2, 2013, p. 4.

55) 이봉수, “SWIFTNet TSU의 계보학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9, p. 10.

56) ICC, *op. cit*(Document No. 470/1206rev2), p. 11.

인은 공급망금융을 제공받고 수취은행은 매도인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⁵⁷⁾

그리고 BPO의 거래에서는 TMA를 통해서 의무은행과 수취은행간에 정보의 교환이 있고, TMA가 정보의 일치여부를 자동심사하여 통보해 주므로 신용장거래와 같은 통지은행이 필요 없다. 따라서 URBPO 750의 거래는 순수한 은행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⁵⁸⁾

3. 개설은행과 의무은행에 관한 규정

1) 단일의 개설은행 대 복수의 의무은행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의미한다.⁵⁹⁾ 이러한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구에 응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직접 개설의뢰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래은행 가운데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고 외국환업무에 경험과 지식을 겸비함은 물론 해외에 많은 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을 보유한⁶⁰⁾ 단일의 은행을 선택하게 된다.

BPO 거래에서는 이와 대조적이다. 의무은행은 BPO를 발행하는 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⁶¹⁾ 수취은행에 대하여 정지조건부의 지급약속을 하는 은행이 되며, BPO 거래에 따른 의무은행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매수인은행이 단독으로 의무은행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흔할 것이지만 매수인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이 단독으로 의무은행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제3의 은행이 매수인은행과 공동으로 의무은행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은행이 제2의무은행으로 참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의무은행이 복수인 경우에 각 의무은행은 각기 부담한 비율을 한도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⁶²⁾ BPO는 확정기준정보를 단위로 발행하므로 의무은행이 하나인 경우에 그 확정기준

57) ICC, "Bank Payment Obligation (BPO):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orporates", *Policy and Business Practices*, pp. 1~2.

58) 송경숙 외 1인, 전계논문, p. 69.

59) UCP 600 제2조.

60) 오원석·박광서·이병문, 글로벌무역개론, 제2판, 탐북스, 2015, p. 280.

61) URBPO 750 제3조.

62) 박세운 외 3인, 전게서, p. 81.

정보에 하나의 BPO가 담기게 된다. 그러나 의무은행이 복수인 경우에는 하나의 확정기준정보에 동일한 복수의 BPO가 담기게 된다. 이때, 각각의 의무은행은 자기 자신의 BPO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기 부담한 비율을 한도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⁶³⁾

2) 개설은행의 권리의무 대 의무은행의 권리의무

신용장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에 대해 지급·인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은행에 요구하기도 하며,⁶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을 실행한 후에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라면 확인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자가 은행의 환매청구에 기초하여 매입대금을 반환하고 수입자로부터 조급하게 대금회수를 하게 된다.⁶⁵⁾

그러나 URBPO 750은 수취은행이 매도인에 대한 결제에 실패했을 때, 매도인이 의무은행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⁶⁶⁾ 단지 의무은행이 수취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취은행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의무은행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에 관한 규정은 매도인과 은행간의 별도의 약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신용장의 확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BPO 방식에서는 매도인이 의무은행에 대하여 소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 수취은행과 매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URBPO 750에서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장거래와 차이가 있다.⁶⁸⁾

4. BPO 양도의 부존재

UCP 600은 신용장의 양도와 대금채권의 양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URBPO 750은 오직 대금채권의 양도만을 다룰 뿐이다. BPO 거래에서는 양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63) 상계서, pp. 81~82.

64) 김희준, 전제논문, p. 525.

65) 강원진, 신용장론, 제5판, 박영사, 2007, pp. 77~78 참조.

66) Wynne *et al*, *op. cit.*, p. 102.

67) ICC, *op. cit*(Document No. 470/1221-12), p. 4.

68) Wynne *et al*, *op. cit.*, p. 104.

UCP 600 제38조에는 양도가능신용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조에 따르면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가 ‘양도가능’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2수익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⁶⁹⁾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9조는 “신용장에 양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신용장 하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금을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오직 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것이고, 신용장 하에서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용장의 양도는 양도가능신용장에 있어서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인 반면, 대금채권의 양도는 신용장의 양도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할 권리의무를 유보하면서 신용장에 의하여 수권되는 대금청구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⁷⁰⁾

그러나 BPO 거래에서는 수취은행의 역할을 제3의 은행에게 양도하는 신용장거래에 존재하는 양도제도는 없으며, 단지 매도인이 수령할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한다. 결국, BPO상 대금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나 수취은행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⁷¹⁾

5. 준거법 규정

UCP 600은 준거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URBPO 750은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거래계약에서는 많은 경우 준거법의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지의 문제는⁷²⁾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 가운데 가장 복잡하면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⁷³⁾

69) UCP 600 제38조 제b항.

70) 절차상으로는 신용장의 양도에서 수익자는 양도되는 신용장의 사용권리 그 자체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면 되지만, 신용장대금의 양도에서는 원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등에 제시하여야 하는 정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익자가 미리 지정한 제3자에게 자신의 신용장대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71) “수취은행은 BPO상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대금채권을 그 준거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본조는 오직 대금채권의 양도에만 관계되고, 확정기준정보상 수취은행의 역할을 다른 은행에 이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URBPO 750 제16조 제a항).”

72)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자국의 국내법, 상대방 국가의 국내법, 제3국의 국내법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김희준, 전제논문, p. 523).

73) 상계논문, p. 526.

BPO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무은행이 속한 국가와 수취은행이 속한 국가의 법 중 어느 국가의 법을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준거법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⁷⁴⁾ 이에 대하여 URBPO 750 제15조에서는 “BPO의 준거법은 확정 기준정보에 명시된 의무은행의 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법으로 한다.”⁷⁵⁾ 그리고 “URBPO는 해당 준거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준거법을 보충하는바,⁷⁶⁾ 의무은행은 준거법이나 필요적 규제에 의하여 금지된 때에는 BPO상 그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⁷⁷⁾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계약관계에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규칙을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국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의 은행과 BPO 계약을 체결한다면 분쟁발생시 각기 다른 법체계에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⁷⁸⁾ 이는 결국 준거법 선택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실현하여 BPO 계약체결시에 준거법의 합의를 통해 확실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⁷⁹⁾

V. 결 론

정보화의 발달과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발맞추어 반세기동안 국제무역결제 수단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신용장제도는 거래의 비효율성 및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등 그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전자플랫폼을 통한 은행간 전자정보거래에 은행의 지급확약이 추가된 BPO 제도가 2013년 7월 1일, 국제통일규칙을

74) 상계논문, p. 526.

75) URBPO 750 제15조 제a항.

76) URBPO 750 제15조 제b항.

77) URBPO 750 제15조 제c항.

78) URBPO 750 제2조 제a항에 의하면, “URBPO는 BPO에 적용되는 규칙이며, 확정기준정보 내의 지급의무기재부분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거나 각 참여은행이 이 URBPO가 BPO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URBPO는 당해 기준정보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변경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한 각 참여은행을 구속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BPO 거래에 URBPO 750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그 적용합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URBPO 750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에 반하는 URBPO 750상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박세운 외 3인, 전게서, p. 95 참조).

79) 김희준, 전계논문, p. 527 참조.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제결제제도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BPO 제도는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O/A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인식되며, O/A 방식에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고 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 및 금융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BPO 제도는 신용장제도의 근본적 토대 하에서 대금지급에 대하여 신용이 약한 수입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무역의 대금결제측면에서 동 제도는 무역환경에 맞 맞추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신용장제도보다 한발 앞섰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국제무역환경에서 그 효용성이 보다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이러한 BPO 제도는 TSU, TMA 및 ISO 20022 TSMT 메시지를 그 기술적 배경으로 개발되었으며, 국제무역거래에서 위험완화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존 신용장거래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유용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지급확약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전자적 업무처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강화에 따른 이점과 구조화된 산업표준을 준수한다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L/C 제도와 BPO 제도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그 거래방식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L/C 제도는 물리적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BPO 제도는 전자정보에 의한 거래로서 객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둘째, 두 거래는 기본당사자에서 차이를 보인다. L/C 거래에서는 관련은행 외에 매도인과 매수인도 거래당사자로서 참여하지만 BPO 거래에서는 전자플랫폼을 통해 관련은행만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며, 은행을 제외한 당사자는 URBPO의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 셋째, L/C 거래에서는 단일의 개설은행만이 존재하나 BPO 거래에서는 복수의 의무은행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개설은행과 의무은행의 권리의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넷째, L/C 거래에 존재하는 양도제도는 BPO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다섯째, L/C 거래를 규율하는 UCP에는 준거법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BPO를 규율하는 통일규칙인 URBPO는 준거법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와 같은 실질적인 비교를 통해 L/C 제도보다 발전된 BPO 제도를 국제무역의 대금결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용하는데 따른 이해를 돕고 편의를 주고자함에 본 논문의 취지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신용장론, 제5판, 박영사, 2007.
- 김희준, “TSU/BPO 방식의 국제물품매매대금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 4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9.
- 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 · 전국은행연합회,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2007.
- 박세운 · 한기문 · 류건우 · 허해관, URBPO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2016.
- 송경숙 · 채훈, “TSU/BPO 거래의 특성 및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국제상학 제3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6. 6.
- 오원석 · 박광서 · 이병문, 글로벌무역학개론, 제2판, 탐북스, 2015.
- 이대우 · 양의동, “URBPO 실행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0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9.
- 이봉수, “SWIFTNet TSU의 계보학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9.
- 임재욱, “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4. 8.
-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2007.
-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49권 제4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2.
- 한낙현,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제2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12.
- Casterman, A., “The BPO and the future of trade finance”, *DCInsight*, Vol. 18, No. 2, April-June 2012.
- _____, “The BPO rules: on the way to adoption”, *DCInsight*, Vol. 19, No. 1, January-March 2013.
- _____, “Modernizing global trade finance practices”, *Journal of Payments Strategy & Systems*, Vol. 6, No. 3, July 2012.
- Collyer, G. and Taylor, D., “Two pillars of the Banking Commission look back at the last two decades”, *DCInsight*, Vol. 20, No. 1, January-March 2014.
- Goparaju, M., Meyer, K. M and Chiu, C., “Bank payment obligations slowly gain

- transaction”, *DCInsight*, Vol. 19, No. 2, April-June 2013.
- Hennah, D. J.,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ICC Publication No. 751E, 2013.
- _____, “Bringing the Bank Payment Obligation to market”, *DCInsight*, Vol. 16, No. 3, July-September 2010.
- ICC, “Frequently Asked Questions - Corporates”, *Discussion Paper*, Document No. 470/1221-12, 2013.
- _____, “Frequently Asked Questions - Corporates”, *Discussion Paper*, Document No. 470/1206rev2, 2013.
- _____, “Bank Payment Obligation(BPO):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orporates”, *Policy and Business Practices*.
- Jimenez, G. C., *ICC Guide to Export/Import*, 4th Edition, ICC, 2012.
- Madhavan, V., “BPO - a step toward electronification in supply chain finance”, *DCInsight*, Vol. 19, No. 2, April-June 2013.
- Meynell, D.,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 18, No. 2, April-June 2012.
- Stephen, L., “ISO 20022 and real-time domestic payments”, *Journal of Payments Strategy & System*, Vol. 9, No. 1, 2015.
- SWIFT, “Trade Services Utility: Helping banks meet the supply chain challenge”, *TSU Factsheet*, 2008.
- Tan, K. C., “Bank Payment Obligations: The Way Forward”, *BPO Press coverage*, January 2012.
- Wynne, G. L. and Fearn, H., “The bank payment obligation; will it replace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now, or ever?”,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2014.
- https://www.swift.com/myswift/ordering/order-products-services/trade-services-utility-tsu_

ABSTRACT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the BPO System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L/C System -

Eun-Hee JANG · Hee-Jin JEONG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or Bank acting on behalf of the buyer to a Recipient Bank acting on behalf of the seller to pay on satisfaction of certain specified conditions. There have been a Trade Service Utility(TSU), a 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TMA) and ISO 20022 TSMT messages that core electronic technical systems linked to the BPO.

As a key usefulness of the BPO, it brings to market an alternative means of satisfying the risk mitigation, financ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needs of banks and businesses engaged in trade. That is, corporates can spread the risk among multiple Obligor Banks by requesting multiple BPOs for the same trade transaction not to exceed the value of the initial transaction. Since the BPO replaces the manual document checking process with the electronic matching of data, buyers and sellers will benefit from significantly increased accuracy and objectivity. By using BPO, buyers and sellers can become trusted counterparties by demonstrating reliability and giving sellers the assurance of being paid on time as per the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agreed.

When compared to L/C, the BPO requires submission of data only. This requires a change of practice of those accustomed to dealing with physical documentation. The beneficiary of a BPO is the Recipient Bank which is always the Seller's Bank. In the meantime, banks will need to agree between themselves that the URBPO 750 will be applied, modified or excluded. However, customers of banks will face low transactional costs due to a fully automated process and standardized data format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documentation. There is no amendment and cancellation rules in the URBPO 750s, but only have Assignment of Proceeds rules.

As a result, the BPO is likely to enable new business opportunities, lower costs, fast transaction process and strengthen key customer relationships.

Keywords : BPO, Trade Service Utility, 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 ISO 20022 TSMT Message, URBPO 750